

학 고 법 인 정 신 학 원

정신법제 796호 (25-3107)

1977. 2. 5

수신 서울특별시장 *중리권* *엔리움* 1361221

참조 도시 계획과장

제목 강남구 잠실지구 학교용 매입 대지에 대한 문의

본 법인은 정신여자중학교 및 정신여자고등학교를 유지 경영 하는 학교법인으로 두 학교중 정신여자중학교를 국가 시책에 호응하여 강남구 잠실지구로 이전 하고자 아래에 표시한 학교 용지를 귀하로 부터 1975년 12월 20일자로 4,000평 1976년 4월 10일자로 3,500 평을 각각 매수 완료한바 있습니다.

본 법인은 매입한 목적대로 1977학년도 부터 이전 계획을 준비 하고자 다음 사항을 문의 하오니 조량 하시와 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1. 매입 학교 용지의 표시

강남구 잠실지구 (가. 1) 4,000평

" (나. 1) 3,500평

2. 문의사항

가. 위 대지의 임시 지번에 대한 확정 지번과 이전 등기 수속 서류를 언제 교부 받을수 있습니까?

나. 위 대지에 현재의 상황에서 건축 허가 신청 및 시공 진행 에 지장은 없습니까? 끝.



학 고 법 인 정 신 학 원

이 사 장 김 욱 선



*정신 여자 중학교*

663

*796*  
*1977. 2. 5*  
*796*

김포역 방

서울		결재	가장
접수	197. 2. 7	지 시 사 하	가 지 위 탁 할 것
접수 번호	제 192호		
접수 일자	가		
접수 인			

665

664



No. \_\_\_\_\_

# 법 무 전

1976 . 11 . 20 .

수신: 기획관리 과 장

제목: 자료 보완 요구

1, 주정4324-1364( 76. 10. 26 )로 의  
 퇴한 귀과안 심의에 필요하오니 서울  
 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제~~22~~<sup>23</sup>조의  
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 
 주시기 바랍니다

- (1) 퇴사생용제되는 법령 조문 일체본 1부
- (2) 귀과와 관제리의 대립되는 의견서 2부
- (3) 관련 문서 사본 2부
- (4)
- (5)

첨부: 정약서 일건서부 2부

발신: 법무과장

법제계장

1976. 11. 22  
 법무부  
 법무담당관실

~~674~~ ~~670~~  
 666

제 4군부서간이내에 부분 2부문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외공표에 위한 시정자료
2.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유인물
3. 실·과에서 조사되는 업무통계

제3장 법 부

제20조 (목적) 이 장은 법제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1조 (정의) ①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, 규칙, 훈령을 말한다.  
 ② 질의라 함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.  
 ③ 쟁송이라 함은 당사 또는 소송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·행정소송과 이에 다른 각종 신청사건 및 소원을 말한다.

제22조 (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) 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(이하 폐정이라 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국·실장이 관제국·실장의 협의를 거쳐 그 안을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정이유서 4통
2. 제정안 4통
3.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4통
4. 관계조문발췌문 4통
5. 기타 참고사항 4통

② 기획관리관(법무담당관)은 진항의 사안을 심사처리하며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

수 있다.  
 ③ 기획관리관은 법령·자치법규를 포함한다(이하 같다)의 정(제, 계, 폐 이하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법령의 주관국·실장에 통보하여 정비안을 마련제출토록 할 수 있다  
 이때 통보를 받은 주관국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안을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 (법령질의 및 해석) ① 국·실장이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1. 질의 요지
2. 관계참고문건 및 법령발췌
3. 관계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
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의는 이를 반려한다.

1. 질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질의
2. 자명한 것으로 책임회피적이라고 인정되는 질의
3. 구비요건보완과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하는 질의
4. 제관에 관한 질의

③ 법령해석의 한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2개국·실·과 이상이 관련된 해석
2. 당해국·실·과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해석
3. 기타 당해국·실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해석(개정75.11.41)

④ 타기관에 질의하거나 법률고문에게 질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671